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498 발의연월일: 2020. 9. 3.

발 의 자:윤영찬ㆍ권칠승ㆍ박성준

황운하 · 김민철 · 안규백

전혜숙 · 김경만 · 서영석

이성만 · 김승원 · 이상직

박영순 • 이워택 • 양양영

맹성규 · 남인순 · 김회재

한정애 · 송재호 · 이광재

이수진 · 송갑석 · 윤미향

윤건영 • 야진비) 의원

(26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의 연구·개발·생산·이용 등에 따라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우려와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까지 저선량 방사선의 건강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정부의 책무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 강 영향을 조사할 수 있도록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 건강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활용·보호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제111조 제1항제15호, 제116조 제4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 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 (死因) 등에 관한 자료
 - 5.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자료
- 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련 자료
- 10.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자료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11조에 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
	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 이용
	으로 인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조
	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
	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
	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
	<u>보</u>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
	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 <u>5.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u><u>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u><u>료</u>
-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에 따른 건강진단(특수건강진 단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자료
- 8.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 입국자료 중 항공기 이용 관 런 자료
- 10. 그 밖에 위원회가 건강영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정보·자료
-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 통제기술원, 안전재단, 그 밖의 관계전문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 14. (생 략) <u><신 설></u>

15. (생략)

제11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並科)할 수 있다.

1. ~ 3. (생 략) <u><신 설></u>

<u>된다.</u>	
제111조(권한의 위탁) ①	
1. ~ 14. (현행과 같음)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u>16.</u> (현행 제15호와 같음)	
제116조(벌칙)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	
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	
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	
로 사용한 자	